

## 건설관련 법률상담 사례 ②

###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('06. 8)

**Q** 회사에 대한 채권자가 원청자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채권 중 일부 및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출자증권과 관련한 채권에 대해 중첩적으로 채권가압류를 한 상태에서 공사가 완료되었는바, 원청자가 가압류권자에 대해 공사대금을 지급치 아니함으로써 출자증권에 대한 가압류가 계속 유지돼 불이익을 받고 있다. 이에 대한 대응책은 어떤 것인지?

**A** 원청자로서는 가압류만 된 상태에서 가압류권자에게 당해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없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 채권양도와 양도통지를 한 후 직접 공사대금 지급을 요청하고, 만일 그래도 가압류권자가 출자증권에 대한 가압류를 해지치 않으면 과잉가압류를 이유로 법원에 가압류취소청구를 해야 한다.

### 준공된 부분에 대한 도난사고시 시공사의 책임 여부('06. 8)

**Q** 연차공사 중 기 완공돼 준공된 부분에 대해 도난사고가 발생해 동관을 훔쳐간 사건에 대해 시공회사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는지?

**A** 연차공사라 하더라도 각 공사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길고 당해 시설물이 대학 구내에 있으

며, 이미 준공이 난 이상 준공된 시설물에 대한 관리권은 발주자인 대학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.

따라서 준공된지 1개월 이상 지난 시점에서 발생한 도난 사고에 대해 시공사가 책임을 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.

### 계약내용과 다른 공사시공으로 인한 계약 해제 가능한지?('06. 8)

**Q** 기술협약을 체결한 협력업체에서 계약내용에 따른 공사시공을 하지 않고 다른 방식에 의해 시공하려 할 경우 계약의 해제가 가능한지?

**A** 상대방의 시공방법이 발주자나 감리자에 의해 수용될 수 없는 것임을 주지시키고, 그밖에 약정에 따른 계약의 이행에 관해 상당한 기간을 주어 최고를 한 다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할 뜻을 명시하는 경우 계약해제를 할 수 있다. 이를 위해 수급인도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했음을 증거에 의해 준비해야 할 것이다.☞

〈자료제공 : 권진웅 대한설비건설협회  
서울특별시회 고문번호사〉